

05

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

1. 사업대상자

-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구매하는 자,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(TMR 및 TMF) 가공공장(이하 'TMR업체'라 한다), 국내산 조사료를 축산농가 등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센터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품질등급제를 적용한(동계 B등급 이상, 하계 C등급 이상) 국내산 조사료(짚류·야초류 제외)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*는 조사료 공급·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, 축산단체(전국한우협회, 한국낙농육우협회, 한국조사료협회, 한국종축개량협회,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) 및 관할 시·군에 제출

* 농업인은 한우·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·허가농가, TMR업체는 지역조합·품목조합 TMR업체 및 축산단체(전국한우협회, 한국낙농육우협회, 한국종축개량협회,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, 한국조사료협회)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·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

3.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

- 감모손실분, 보관료 등 생산·유통 구축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

4. 지원 형태

- 축산발전기금 보조 40%, 자부담 60%

조사료 현황 및
일반기술동계 사료작물
재배기술하계 사료작물
재배기술기타 사료작물
재배기술사일리지와
건조 제조추진과정 및
관리기술기축분도
이용기술농식품부
지원사업

5. 지원 기준 및 방법

-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, 자세한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추진요령 참고

구분		정산주기	물량	kg당 지원 단가		비고
이용촉진비	정기정산	연 6회	-	15원		-
	추가정산	연 1회 (연도 말)	3천톤 이상	10원		정기정산 자료 합산하여 지급
하계조사료 이용촉진비		연 1회 (연도 말)	50톤 이상	기본	5원	일반 이용촉진비 금액과 합산하여 지급
				200km 이상	10원	
				300km 이상	15원	
유통센터 (공급물량)		연 1회 (연도 말)	3천톤 이상	5원		연도말 정산
TMR 업체		연 1회 (연도 말)	전년대비 증가분	5원		연도말 정산

* 정기정산 지원단가는 실제 지출비용의 40% 혹은 15원/kg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

-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‘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’ 참고